

청주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시행세칙 전문

제 정 2014. 03. 28. 규칙 제1340호
1차 개정 2014. 04. 28. 규칙 제1344호
2차 개정 2015. 05. 19. 규칙 제1378호
3차 개정 2015. 11. 03. 규칙 제1398호
전부개정 2019. 08. 28. 규칙 제1491호
1차 개정 2019. 10. 14. 규칙 제1497호
2차 개정 2023. 9. 21. 규칙 제163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청주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이하 “선정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제2조(교원위원) 교원위원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하는 자로 한다.

제3조(직원위원) ① 직원위원은 공무원직장협의회장 및 전국대학노조 청주교대지부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② 공무원직장협의회장이 2명, 전국대학노조 청주교대지부장이 1명을 추천한다.

③ 선정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추천위원회에 두는 사무직원은 직원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4조(학생위원) 학생위원은 총학생회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단,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생 대표 기구의 장이 추천한다.

제5조(외부인사 위원) 졸업생 위원은 총동문회장이 추천하고, 외부위원은 총장이 지명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① 추천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여야 하며 엄정한 선거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 선거에 관하여 선정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신고 등을 한 사람이 원하는 때에는 그 신상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가 추천위원회에 제출한 서류, 증명자료, 그 밖의 후보자의 신상·경력·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사생활의 비밀을 불필요하게 침해하거나 명예훼손을 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선정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고 이의제기·신고 등이 있는 사항을 심의·의결 할 때에는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위원회가 공개하기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에 취임한 때에 「청주교육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 서약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선거권 등

제1절 교원 선거권 등

- 제7조(교원선거인의 투표결과 산정방법)** ① 교원선거인의 투표결과는 선정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합의된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23.9.21.>
② 투표결과 반영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1.>

<산정식 예시>

교원 총 선거인수 70명, 유효투표수가 60명, 후보자 A가 50표를 획득했다면 A후보의 환산득표율은 50표(득표수)/60명(유효투표수)*(교원반영비율)=환산득표율(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

제2절 직원 선거권 등

- 제8조(직원선거인의 투표결과 산정방법)** ① 직원선거인의 투표결과는 규정선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합의된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23.9.21.>
② 투표결과 반영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1.>

<산정식 예시>

직원 총 선거인수 80명, 유효투표수가 75명, 후보자 A가 30표를 획득했다면 A후보의 환산득표율은 30표(득표수)/75명(유효투표수)*(직원반영비율)=환산득표율(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

제3절 학생 선거권 등

- 제9조(학생선거인의 투표결과 산정방법)** ① 학생선거인의 투표결과는 선정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합의된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23.9.21.>
② 투표결과 반영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1.>

<산정식 예시>

학생 선거인수가 1,200명, 유효표수가 900명, 후보자 A가 290표를 획득했다면 A후보의 환산득표율은 290표(득표수)/900명(유효투표수)*(학생반영비율)=환산득표율(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

제4절 선거인명부 작성

- 제10조(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원 및 조교의 선거인명부는 교무처, 학생선거인 명부는 학생처와 교육대학원, 직원선거인 명부는 총무처에서 작성한다. <개정 2023.9.21.>

제4장 선거에 관한 각종 서류의 서식 등

제11조(후보자 등록 신청서류) ① 선정규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서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후보자의 인영 등은 관할선관위에서 정하는 서식과 방법에 따른다.

② 선정규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천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후보자는 필요시 추천위원회에 필요한 수량의 추천서 교부를 요청하되([별지 제3-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의 “추천대상자 인적사항”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추천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후 추천인 1명당 추천서 1장을 받아야한다.

③ 선정규정 제19조제1항제2호(재직증명서)·제4호(보직사퇴서)는 본교에서 발행 또는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④ 추천위원회는 선정규정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의 목록 및 그 서식을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0일까지 관할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위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의 위탁신청을 할 때 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제12조(후보자의 추천위원회 제출 서류) 선정규정 제19조제3항에 따라 후보자가 추천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은 서식에 따른다.

1. 이력서([별지 제4호] 서식)
2. 공정행위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
3. 공약준수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4. 대학발전 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

제13조(선거인명부) 선정규정 제18조에 따른 선거인명부의 작성·확정·정정 등의 사무에 필요한 서식은 [별지 제8호], [별지 제9호], [별지 제10호]의 서식에 따르며, 온라인투표를 위한 선거인명부 전산파일은 관할선관위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별도로 작성한다.

제14조(선거공보·선거벽보의 제출·정정) 선정규정 제22조제3항에 따른 추천위원회의 선거공보 확인은 [별지 제12호]의 서식, 선정규정 제22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의 선거공보 제출 및 선정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의 선거벽보 제출은 [별지 제11호]의 서식, 선정규정 제22조제5항에 따른 선거공보의 정정 요청 및 선정규정 제26조제3항에 따른 선거벽보의 정정 요청은 [별지 제13호]의 서식으로 한다.

제15조(이의신청서 등) ① 선정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4호]의 서식으로 한다.

② 선정규정 제22조제6항에 따른 선거공보에 대한 이의신청, 선정규정 제25조제4항에 따른 선거홈페이지에 게시된 후보자 정보 등에 대한 이의신청, 선정규정 제26조제3항에 따른 선거벽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5호]의 서식으로 한다.

③ 선정규정 제38조에 따른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16호]의 서식으로 한다.

제16조(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공고 등) 선정규정 제36조에 따른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공고는 [별지 제17호]의 서식, 선정규정 제38조제3항·제39조제5항에 따른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의 무효·취소에 대한 공고는 [별지 제18호]의 서식으로 한다.

제5장 선거운동

제17조(공개토론회) ① 선정규정 제23조제1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주최하는 공개토론회를 제외하고, 학내의 기관, 단체, 선거인은 임의로 후보자를 초청하여 토론회, 정견발표회, 간담회, 설명회, 그 밖의 집회, 모임 등을 개최할 수 없다.

② 추천위원회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 학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과 요청이 토론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선거공보) ① 선정규정 제22조에 따른 선거공보의 규격·면수 및 앞면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규격: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
 2. 면수: 12면 이내
 3. 앞면에 적어야 할 사항: 선거명,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
- ② 선거공보의 제출수량은 제3항에 따른 예상 선거인수에 100분의 10을 더한 수로 한다. 이 경우 작성·제출할 수량의 단수가 10미만인 때에는 10대로 한다.
- ③ 추천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까지 예상 선거인수, 선거공보의 작성·제작에 필요한 세부사항, 선거공보의 확인일자 및 확인을 받기 위해 제출하여야 할 선거공보(안) 등의 사항을 공지하며, 추천위원회는 선거일 공고일 전일까지 관할선관위에 작성 및 제출 수량, 제출장소, 제출기한을 통보한다.
- ④ 추천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까지 선거공보의 제출수량을 공지한다.
- ⑤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의 수량이 선거인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거인명부등재순(교원, 직원, 학생 순)에 따라 제출매수에 달하는 순위자까지 발송한다.
- ⑥ 선정규정 제22조제5항에 따른 선거공보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추천위원회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후보자와 이의신청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선정규정 제22조제5항의 선거공보에 대한 이의신청은 선거공보의 제출·접수 또는 발송의 계속진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9조(소형인쇄물 제작) ① 후보자는 정책 홍보를 위하여 소형인쇄물 1종을 제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후보자가 부담한다.

- ② 후보자가 소형인쇄물을 제작한 경우 추천위원회가 정한 기한과 방법에 따라 이를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소형인쇄물은 다음 각 호의 규격에 따라 16면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1. 용지 크기: 길이 29.7센티미터, 너비 21센티미터 이내
 2. 유형: 인쇄물
 3. 제출부수: 30부
- ④ 소형인쇄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실대로 게재되어야 한다.
1. 후보자의 주요 인적사항(사진, 성명, 연령)
 2. 후보자의 주요 경력과 교육 및 연구 업적
 3. 후보자의 상훈 수여 및 징계 처분 사항
 4. 대학 운영에 관한 후보자의 소견
 5. 대학 발전을 위한 후보자의 주요 정책과 실행 계획
- ⑤ 소형인쇄물의 배포 시기 및 금지 사항 등 기준은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까지 추천위원회가 이를 공고한다.
- ⑥ 제출된 소형인쇄물은 정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선거 규정 또는 세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후보자는 제출기한까지 이를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⑦ 소형인쇄물의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소형인쇄물은 접수하지 않는다.

제20조(소형인쇄물 등 배부) ① 선정규정 제27조에 의거 소형인쇄물을 배부하는 우편발송의 방법에는 대학 우편함을 이용하는 방법을 포함하며, **발송 방법 및 시기** 등은 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후보자는 선정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른 발송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소형인쇄물 등을 발송, 게재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제21조(영상 홍보물 제작) ① 후보자는 정책 홍보를 위하여 영상홍보물 1종을 제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후보자가 부담한다.

- ② 후보자가 영상 홍보물을 제작한 경우 추천위원회가 정한 기한과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영상 홍보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5분 이내로 제작하여야 한다.
 1. 길이 720픽셀 및 너비 1,280픽셀 이내 크기로 HD급 이하의 화질을 갖춘 화면
 2. 단색으로 처리된 배경 화면
 3. 후보자만 출연 가능
- ④ 영상 홍보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실대로 제작하여야 한다.
 1. 후보자의 주요 경력과 교육 및 연구 업적
 2. 대학 운영에 관한 후보자의 소견
 3. 대학 발전을 위한 후보자의 주요 정책과 실행 계획
- ⑤ 영상 홍보물의 배포 시기 및 금지 사항 등 기준은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까지 추천위원회가 이를 공고한다.
- ⑥ 제출된 영상 홍보물은 정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다만, 선거 규정 또는 세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출기한까지 해당 후보자가 정정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 ⑦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영상 홍보물은 추천위원회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 ⑧ 영상홍보물은 규정 제20조제2항에 의한 선거운동방법에 활용할 수 있으며, 제22조의 선거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추천위원회에서 제출받은 후보자의 영상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다.

제22조(선거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① 총장은 추천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선정규정 제25조제2항의 선거홈페이지를 학내 정보통신망에 개설·운영한다.

- ② 선거홈페이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천위원회와 총장이 협의하되, 다음 각 호의 구성과 기능을 갖추도록 한다.
 1. 선거관련 정보 제공: 관할선관위, 추천위원회, 총장 등에서 선거와 관련된 각종 공고, 공지사항을 게시하고 선거에 관한 법령·규정을 안내하는 기능
 2. 후보자정보 제공: 선거후보자의 경력·학력·연구실적 등에 관한 정보, 발전계획서, 선거공보를 게시하여 선거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3. 후보자의 정책 홍보: 각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 공약 등을 글, 도화, 동영상으로 홍보하고 게시판을 통해 선거인의 질의에 응답할 수 있는 기능
 4. 추천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신고 등을 접수하는 기능
 5. 공개토론회의 실황중계 또는 그 녹화영상물을 게시하는 기능
- ③ 후보자가 선정규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거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동영상에는 후보자의 주요 경력과 업적, 총장관, 대학관, 대학발전방향 등에 대한 견해 또는 정책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을 수 있다. 다만, 개인연설회·찬조연설·좌담회·토론회 등의 성격을 띠거나 그러한 성격을 갖는 부분은 담을 수 없다.
- ④ 선거인이 선정규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거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동영상에 관해서는 제3항의 단서를 준용한다.

제23조(선거벽보) ① 선정규정 제26조에 따른 선거벽보의 규격은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로 한다.

- ② 후보자가 제출할 선거벽보의 수량은 추천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게시수량에 그 100분의 10을 더한 수로 하고, 후보자가 보완게시를 위하여 보관할 수량은 추천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게시수량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수로 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작성할 수 있는 총수량의 단수가 10미만인 때에는 10개로 한다.
- ③ 후보자는 추천위원회가 게시한 선거벽보가 오손되거나 훼손되어 보완게시하려는 때에는 공고된 수량의 범위에서 그 선거벽보 위에 덧붙여야 한다.

제6장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

제24조(동순위자 중의 선정방법) 선정규정 제35조제3항에서 예정하는 사정으로서, 득표순위가 같은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있어서, 선정규정 제35조제1항의 제1차투표의 차순위득표자가 1인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선정규정 제35조제2항의 결선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들이 결선투표의 득표수도 같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 및 그 선정순위를 정한다.

1. 제1차투표(과반수 득표자가 있는 경우)에서 득표수가 같은 차순위득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본교에서 전 임교원으로 근속한 기간이 가장 긴 후보자(이하 “장기근속자”라 한다)를 제2순위 총장임용후보자로 한다.
2. 총장임용후보자 2인이 정해지는 결선투표의 득표순위에서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같은 득표순위의 후보자들의 제1차투표의 득표순위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하고, 제1차투표의 득표수도 같은 때에는 장기근속 순위에 따라 정한다.

제25조 <삭제 2019.10.14.>

제7장 보칙

제26조(기타사항) 이 시행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서류 양식 등 포함)은 추천위원회가 정한다.

부칙(2019. 8. 28. 규정 제1491호)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권위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이 세칙에서 정한 각종 기간 및 기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가 조정하여 공지하는 기간 및 기한을 이 시행세칙상의 관련 기간 및 기한으로 본다.

부칙(2019. 10. 14. 규정 제1497호)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간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권위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이 세칙에서 정한 각종 기간 및 기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가 조정하여 공지하는 기간 및 기한을 이 시행세칙상의 관련 기간 및 기한으로 본다.

부칙(2023. 9. 21. 규정 제1638호)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 서식]과 같음 <개정 2018. 1. 19.>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

- 1. 성 명: (한자:)
- 2. 주민등록번호:
- 3. 등록기준지:
- 4. 주 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5. 직 업:
- 6. 학 력:
- 7. 경 력:

년 월 일 실시하는 청주교육대학교 제○○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인

청주시 서원구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청주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추천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부(통).

- 주: 1. 성명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을 그대로 적어야 하며, 신청서에 기재된 성명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 2. 경력은 중요한 사항(2개 정도)만을 적습니다.
 - 3.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 4. 첨부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의 목록을 적고 그 서류를 제출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 서약서

본인은 청주교육대학교 제〇〇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를 관리하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집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총장선거와 관련된 각종 법령과 규정들을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선거관리와 관련된 비밀을 준수할 것을 다짐합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시 스스로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하거나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조치하는 결정에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서약인: (소속·직급 등) 성명 (인)

청주교육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후보자 추천서

추천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한자)
	소 속	
	직 급	
	생년월일	(만 세)
	주 소	

위 사람을 청주교육대학교 제〇〇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을 위한 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생년월일	학과명	추천연월일	㉠

- ※ 1. 청주교육대학교 재직 전임교원 10인의 추천을 받아야 함
 2. 추천자 1인당 본 양식에 의하여 1장씩 제출하여야 함
 3. 추천자“㉠” 란은 서명 또는 날인 모두 가능

청주교육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이 력 서

사 진

※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으로
부착

1.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현근무처			직 위	
주 소				
전화번호	사무실 :	자택 :	휴대전화 :	
e-mail				

2. 학력(대학이상 학력만 기재)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3. 경력(별지 추가 사용 가능)

기 간	기 관	직위·직급	비 고

4. 병역사항

병역구분	복무기간	군별	계급	병과
필/면제				

5. 상 훈

종류	수여일자	수여기관

6. 징 계

종류	징계일자	징계기관

7. 연구업적 목록(별지 추가 사용 가능)

항 목	논문	저서	특 허	기타 각종실적	비 고
연구업적 총 실적	편	편	건	건	

※ 연구업적 산출기간 : 2007. 2. 1.부터 현재까지

① 논문 및 저서

연번	구분	이름	공저 차수	제 목	게재일자 (등록일자)	게재학술지명 (권,호,쪽)	비고

주) 구분은 국제전문학술지, 국내전문학술지 등으로 구분하되, 자세한 사항은 청주교육대학교 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지침에 따른다.

② 특허

연번	이름	특허명	등록일자	등록번호	국가명	비고

③ 기타 각종실적

연번	이름	실적내용	일 자	국가명	비 고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후보자 : (인)

청주교육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귀중

【별지 제6호 서식】

공약준수 서약서

본인은 청주교육대학교 제〇〇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 입후보한 자로서 대학발전을 위해 제시한 공약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후보자 : (인)

청주교육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대학발전 계획서

※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세, 국내 최상위권 대학 진입을 위한 대학경쟁력 강화방안, 대학경영방침 및 대학경영 선진화 계획, 조직 및 인사관리, 공직윤리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여 주십시오. (분량 : A4용지 15매 이내)

【별지 제8호 서식】

〈표 지〉

년 월 일 실시 청주교육대학교 제○○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

선 거 인 명 부 (교원 · 직원 · 학생)

작 성: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확 정: 년 월 일

○○대학(원)(○책 중 ○권)

청주교육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인

〈내 지〉

등재번호 ①	주 소 (소 속) ②	성 별 ③	생년월일 ④	성 명 ⑤	비 고 ⑥

주: 1. 명부기재방법

- ① “등재번호”칸에는 선거인구분(교원, 직원, 학생을 말한다) 및 소속기관 단위로 그 선거인 성명의 가, 나, 다순(성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생년월일순)으로 적습니다.
- ② “주소(소속)”칸에는 청주교육대학교의 주소를 적고 괄호안에 그 소속을 적습니다.
- ③·⑤ “성별”칸과 “성명”칸은 선거인의 성별과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 ④ “생년월일”칸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적습니다.
- ⑥ “비고”칸의 기재와 선거인명부의 수정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가. 관할선관위는 선거인명부확정 후에 선거권이 없는 자·사망자·이중등재자·오기된 자를 위탁단체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비고칸에 적습니다. 다만, 관할위원회가 선거인명부를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한 후에는 투표관리관이 그 사실을 비고칸에 적습니다.
- 2. 선거인명부 작성 시 윗 칸과 동일사항이 계속될 때에는 “상동” 또는 “/” 표시로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쪽을 달리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 3. 선거인명부가 작성되면 대철하여 선거인명부의 표지와 끝 쪽의 대철부분에 위원장의 장의 직인을 찍습니다.
- 4. 장당 15명정도 기재되도록 적습니다.

〈명부의 끝부분 기재사항〉

(1) 이 선거인명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작성하고 ○ 책으로 (분철)작성하였음.
청주교육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인

(2) 이 선거인명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장소에서 열람하게 하였음.
청주교육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인

(3) 이 선거인명부는 년 월 일 확정되었음.
청주교육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인

주: (3)항은 명부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변경사항의 수정에 따라 추가로 명부에 올린 후 명부의 확정 시 끝부분에 적습니다.

【별지 제9호 서식】

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통보서

구 성 원 수 (년 월 일 현재)	선 거 인 명 부 에 등재된 선거인수	구성원수에 대한 선거인수 비율(%)	비 고

주: 1. 구성원수는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구성원수를 적습니다.

[별지 제9호서식]

선거인명부 확정상황 통보서

① 구성원수 (년 월 일 현재)	②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③ 직권수정에 의한	④ 이의신청 등의 결정에 의한		⑤ 확 정 된 선거인수	구성원수에 대 한 선거인수 비율(%)	비고
		감	증	감			

주: 1. 이 서식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①칸은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구성원수를 적습니다.

②칸은 선거인명부작성상황 통보서상의 선거인수를 적습니다.

③칸은 선거인명부확정 전까지 사망자·선거권이 없는 자 및 이중등재자 등의 발견으로 직권 수정하여 감소된 선거인수를 적습니다.

④칸은 선거인명부 열람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선거인명부확정 전까지 누락자 등에 대한 명부등재 결정으로 인하여 증감된 선거인수를 적습니다.

⑤칸은 ②칸의 선거인수에 ③·④칸의 수를 증감한 수를 적습니다.

2. 이 통보서에는 별지 <선거인명부 수정상황>을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별 지>

선거인명부 수정상황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성명	수정내용		수정사유	비고
		수정전	수정후		

주: 1. "수정사유"칸은 이의제기 등에 대한 결정, 오기, 누락, 이중등재, 사망, 선거권이 없는 자 등으로 적습니다.

【별지 제 10호 서식】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오기사항 등의 통보서

등재번호	성명	오기사항 등	비고

주: “오기사항 등”란에는 오기·선거권이 없는 자·사망자·이중등록자 등에 대한 사실을 적습니다. (예: 성명 중 “○○”은 “××”의 오기임, ○년 ○월 ○일에 퇴직함, ○년 ○월 ○일 사망함 등)

【별지 제11호 서식】

선거공보 · 선거벽보 제출서

1. 선거명: 청주교육대학교 제○○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
2. 후보자성명
3. 제출내역

구분	작성수량	제출하여야 할 수량(가)	제출수량 (나)	부족수량 (가-나)	비고
선거공보 선거벽보					

청주교육대학교 제○○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서 선거공보 · 선거벽보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후보자 ○ ○ ○ (인)

청주교육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귀중

- 주: 1. “제출하여야 할 수량”은 위원회가 정하여 공고한 수량을 적습니다.
2. “제출수량”은 위원회에 실제 제출하는 수량을 적습니다.

【별지 제12호 서식】

청주교육대학교 제〇〇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
선거공보(안) 확인

■ 공보확인 내용

기재사항	기재 여부	증빙서류 대조확인	위원회 확인
규격(27cm* 19cm)			
면수 : 12면 이내			
앞면 의무 기재사항 : 선거명, 기호, 성명			
사진			
학력 및 주요경력			
주요 연구업적 목록			
대학의 발전방향 및 주요 공약			
대학발전방안에 대한 소견			

* 증빙대조가 필요한 경우 : 주요경력 및 학력, 연구업적 목록

선거공보 · 선거벽보 정정요청서

선 거 명		청주교육대학교 제○○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		
후보자	성 명			기 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 소			

1. 정정 매수:
2. 정정 내용:
3. 정정 이유:

청주교육대학교 제○○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서 선거공보 · 선거벽보 내용을 정정하고자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후 보 자 ○ ○ ○ 인

청주교육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귀중

- 주: 1. 이 신청서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정정 매수"간에는 위원회에 제출한 매수 중 정정하고자 하는 매수를 모두 적습니다.

선거인명부에 관한 이의신청서

이 의 신청자	성 명	
	소속 및 직급	
	연락처	
이의 사실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사유	

청주교육대학교 제○○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 ○ ○ 인

붙 임: 증명서류 부.

청주교육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귀중

주: 1. “소속 및 직급” 칸에는 이의신청자가 본교 소속의 선거권자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2. “연락처” 칸에는 위원회로부터 연락 및 처리결과와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주소)를 적습니다.
 3. 이의신청 사유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5호 서식】

(선거공보)·(후보자 정보)·(선거벽보)에 관한 이의신청서

이 의 신청자	성 명	
	소속 및 직급	
	연락처	
이의신청 대상자	후보자 성명	
이의사실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사유	
<p>청주교육대학교 제○○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선거공보)·(후보자정보)·(선거벽보) 게재내용 중 (경력·학력·학위·상훈·연구실적등·그 밖에 후보자관련 정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이의신청자 ○ ○ ○ 인</p> <p>붙 임: 증빙자료 부</p> <p>청주교육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귀중</p>		

- 주: 1. “이의신청 내용”칸에는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대상(경력, 학력, 학위, 상훈·연구실적등, 그 밖에 후보자관련 정보) 및 그 게재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소속 및 직급” 칸에는 이의신청자가 본교 소속의 선거권자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3. “연락처” 칸에는 위원회로부터의 연락 및 처리결과와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중 선택)를 적습니다.
4. 이의신청 사유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5. 증빙자료란 이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진 그 밖의 자료를 말하며,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으면 이의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이의제기서

이 의 제 기 자	성 명	
	소속 및 직급	
	연락처	
이의제기 대 상 자	선정된 총장임용후보자의 성명	
이의제기 사 유		
<p>청주교육대학교 제○○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이의제기자 ○ ○ ○ 인</p> <p>붙 임: 증빙자료 부</p> <p>청주교육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귀중</p>		

- 주: 1. “이의제기 내용”간에는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는 대상(경력, 학력, 학위, 상벌·연구실적등) 및 그 기재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소속 및 직급” 간에는 이의제기자가 본교 소속의 선거권자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3. “연락처” 간에는 위원회로부터의 연락 및 처리결과와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중 선택)를 적습니다.
 4. 이의제기 사유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5. 증빙자료란 이의제기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진 그 밖의 자료를 말하며,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으면 이의제기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공고 제20 - 호

청주교육대학교 제〇〇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결과 공고

「청주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제37조에 의거하여 청주교육대학교 제〇〇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결과]

선정순위	기호	성명	득표수	득표율(%)
1순위				
2순위				

※ 본 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선거인은 「청주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제39조(선정에 대한 이의제기)에 의거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총장임용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청주교육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인

【별지 제18호 서식】

공고 제20 - 호

총장임용후보자 선정(무효·취소) 공고

청주교육대학교 제○○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있어 다음과 같이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이 (무효)(취소)로 결정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청주교육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위원장 인

다 음

기호	성명	생년월일 (만세)	종류 및 사유	발생일